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24일, 조인철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원회의(2026. 2. 12.)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6. 2. 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조인철의원)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임. 그러나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 성공률은 90%를 상회하여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 제품으로 사업화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화 성공률의 경우는 약 50%에 불과하여 미흡한 실정임. 사업화 성공률은 연구개발의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여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9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중소기업의 협동연구개발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부족한 기술력이나 자원, 인프라를 공유·보완하고 비용 절감을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여 기술혁신 수준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협동연구개발에 대하여 법률상 지원 근거가 다수 마련되어 있는 상황으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규정을 추가적으로 신설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 없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9(중소기업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조의9(중소기업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u>